

만수(1) 지구단위계획구역(택지개발사업)

가. 변경연혁

고시일	고시번호	주요변경사항	비고
84. 4. 11.	건설부고시 제1984-122호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84. 12. 31.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85. 1. 9.	건설부고시 제1985-591호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85. 4. 24.	건설부고시 제1985-191호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86. 10. 16.	건설부고시 제1986-462호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88. 1. 21.	건설부고시 제1988-23호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88. 5. 9.	건설부고시 제1988-207호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88. 12. 2.	인천광역시고시 제1988-1407호	○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하수도) 변경	
95. 4. 15.	인천광역시고시 제1995-66호	○ 인천도시계획 결정 고시	
98. 1. 14.	인천광역시고시 제1998-4호	○ 상세계획 결정고시	
01. 10. 15.	남동구고시 제2001-46호	○ 인천도시계획시설(새말초등학교) 신설	
03. 1. 2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3-23호	○ 구역제 변경(만수중학교 포함)	
07. 12. 1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266호	○ 도시공원 명칭 변경	
16. 4. 8.	남동구고시 제2016-37호	○ 도시기반시설(공원, 녹지, 체육시설) 변경	
16. 9. 2.	남동구고시 제2016-95호	○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16. 11. 18.	남동구고시 제2016-134호	○ 도시기반시설(공원, 녹지, 체육시설) 변경	
17. 4. 21.	남동구고시 제2017-39호	○ 도시기반시설(공원, 녹지, 체육시설) 변경	
18. 12. 21.	남동구고시 제2018-154호	○ 도시기반시설(학교) 누락내용 반영	
18. 12. 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8호	○ 일반미관지구 폐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 ○ 가구 및 획지 삭제 - 공동주택용지 33가구 삭제 ○ 용적률 변경	
22. 06. 10.	남동구고시 제2022-52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설	

Ⅲ. 도시관리계획[만수1지구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	만수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번지 일원	586,332.9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86,322.9	100.0	
일반주거지역	573,794.9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74,233.0	12.7	
제2종일반주거지역	219,144.1	37.4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417.8	47.8	
자연녹지지역	12,528.0	2.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794	대1-14	중1-6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0	15~18	집산도로	465	중1-60	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4	15	집산도로	550	대1-14	중1-6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91	중2-34	중2-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4	특수도로	16	중2-34	소3-1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47	소3-22	소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9	소3-22	소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25	소3-8	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79	소2-1	소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71	소2-1	소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41	소2-1	소3-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206	소2-1	소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94	소3-14	소3-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94	소3-14	소3-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84	소2-1	소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120	소2-1	소3-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86	소2-1	소3-2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180	소2-1	소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60	소2-1	소3-17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60	소2-1	소3-1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271	소2-1	소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60	소2-1	소3-1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8	소2-1	소3-1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61	소3-14	소3-1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327	소2-1	중2-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00	소3-5	소3-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3	4	특수 도로	26	소3-17	소3-8	보행자 전용도로	-	

(2)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남동구 만수동 56-3 일원	-	증) 336.4	336.4	-	
신설	2	주차장	남동구 만수동 67-6 일원	-	증) 332.9	332.9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만수동 56-3 일원 - 면적 : 336.4㎡	○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만수동 67-6 일원 - 면적 : 332.9㎡	○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 (변경 없음)

(1) 공원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59	만수 공원	근린 공원	남동구 만수동 15번지 일원	12,528.0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기정	70	인수 공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만수동 69번지 일원	1,816.0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기정	128	아단 공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만수동 37번지	4,005.3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기정	138	등지 공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만수동 28번지	2,400.1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2) 녹지(변경 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	완충녹지	대로1-14호선변	12,646.0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1) 학교(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만수북중	중학교	남동구 만수동 10번지	16,032.5	-	
기정	2	만수여중	중학교	남동구 만수동 27번지	12,269.9	-	
기정	3	조동 초등학교	초등 학교	남동구 만수동 11번지	12,178.9	-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4	인수 초등학교	초등 학교	남동구 만수동 47번지	13,776.5	-	
기정	5	만수 중학교	중학교	남동구 만수동 48번지	12,765.0	-	
기정	6	새말 초등학교	초등 학교	남동구 만수4동 26번지	8,804.2	남동구고시 제2001-46호 (2001.10.05.)	

※ 새말초등학교는 기 결정사항 반영

○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체 육 시설	배드민턴장	만수동 35번지 일원	1,415.4	남동구고시 제2016-37호 (2016.04.08.)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9	만수주공내 하수도	간선 하수도	남동구 만수동 397번지	7,510.8	-	
기정	10	만수주공내 하수도	간선 하수도	남동구 만수동 29-2번지	418.3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A)(변경)

구 분	가구 번호	규 모(m ²)	획지수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층수)
기정	1	1,606.2	9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	1,474.4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3	1,548.1	9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4	1,117.9	6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5	2,042.5	12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6	1,794.3	1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7	3,369.9	1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8	2,083.9	12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변경	8	1,747.5	1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9	3,072.8	16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0	1,251.9	7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1	1,367.0	7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2	941.6	6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3	1,403.4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4	1,999.2	12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5	2,308.2	14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6	2,503.8	14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7	821.1	5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8	1,683.2	1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9	3,334.7	2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변경	19	3,001.8	1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0	2,369.3	14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1	2,318.9	12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2	1,752.7	16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3	1,270.1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4	1,445.1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5	1,373.1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나) 공동주택용지(B, C)(변경 없음)

구분	가구 번호	규 모(㎡)	획지수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층수)
기정	26	21,872.0	2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27	95,439.0	4	공동주택(C)	50	250	15층이하
기정	28	26,900.2	1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29	110,651.8	3	공동주택(C)	50	250	15층이하
기정	30	30,053.0	2	공동주택(C)	50	250	15층이하
기정	31	39,682.0	6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32	8,103.8	2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34	17,865.0	2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35	14,604.0	1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 가구번호 33은 학교로 기 결정된 사항임 : 남동구고시 제2001-46호

2)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별표참조)

【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분류표

【 별표3】 건축물의 배치 분류표

【 별표4】 건축물의 색채 계획

【 별표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별표6】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한 계획

【 별표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A)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시설만 허용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점 - 학원(예능계, 기술계), 독서실 - 노래연습장(지상층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중·고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 (B)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 아파트(5층이하) - 연립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 (C)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 아파트 - 부대시설 -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분류표

용도	건축물의 형태	비고
단독 주택 용지 (A)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이상이 되도록 해야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함.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단, 조립식 경량철골조는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용하며,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 ○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마감 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5cm 이하로 보행자 접근 강화	
공동 주택 용지 (B, C)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 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별표3】 건축물의 배치 분류표

용도	건축물의 배치	비고
단독 주택 용지 (A)	○ 건축물의 전면을 환경적(일조 등)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 ○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공동 주택 용지 (B, C)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공공 시설	○ 건축물의 전면을 환경적(일조 등)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별표4】 건축물의 색채 계획

용도	건축물의 색채	비고
단독주택 용지 (A)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점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 경관 형성(단 강조색은 가능) ○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 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공동주택 용지 (B, C)	○ 단지 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베이지, 연한연두, 연한노랑 등의 부담없고 친근한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 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 ~ 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용도	기 타 사 항		비고
단독주택용지(A)	차량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 출입 불허구간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 이내 구간(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시설	○ 법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권장) ○ 대상부지의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 설치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과 보행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대지안의조경	○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권장)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공동주택용지(B, C)	차량동선	○ 단지내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과의 상충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내구간은 차량의 출입을 금지토록 함	
	주차시설	○ 공동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 시설을 설치 ○ 지상주차장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권장)	
	단지내조경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별표6】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한 계획

용도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가로 시설물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계
	식재	○ 지구내의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 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남동구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 ○ 가로수의 식재간격 6~8m를 기준으로 함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 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장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도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것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연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도시 계획 도로	조명 시설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 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타 사항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 조명 시설 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7】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 ① 1개 업소의 간판 총 수량은 2개 이내,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표시
- ② 한 건물내 같은층에 설치되는 가로형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폭은 점포 점유 가로폭내로 설치. 다만, 입체형·조각형은 예외
- ③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80%이내. 다만, 층간 벽면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 ④ 세로형간판은 부착금지. 다만, 건물정면의 주 출입구(주계단입구) 기둥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 ⑤ 1개의 건물에 2개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간판(종합사인보드)만 허용
- ⑥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⑦ 돌출 간판은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세로폭을 제외한 가로폭·돌출·두께가 동일하여야 하며,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만 설치 가능. 다만, 건물전면폭이 10m 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설치
- ⑧ 옥상간판·네온 및 전광류 사용금지. 단, 의료기관·약국은 제외
- ⑨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다.
- ⑩ 고시일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광고물은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하며, 상호변경에 의한 표시내용 변경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